

보도일시	2021. 10. 1.(금) 조간 *인터넷 2021. 9. 30.(목) 12:00 이후 / 총 8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	과 장 김정수 사무관 남덕현 주무관 정상은/김시현	044-202-8920 044-202-8930 044-202-8927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고용부,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'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' 운영

- ◆ 50~299인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 실시
 - * '20년 기준 총 10,745개소(△ 50~99인: 7,111개소, △ 100~299인: 3,634개소)
- ◆ 자율진단 후 상담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중·소규모 제조업 사업장(50~299인)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.

* 운영일정: △ (10월) 사업장 자율진단, △ (11~12월) 감독관 현장 컨설팅

□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.

○ 특히, 지난 28일 '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'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담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.
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內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조항

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2.~4.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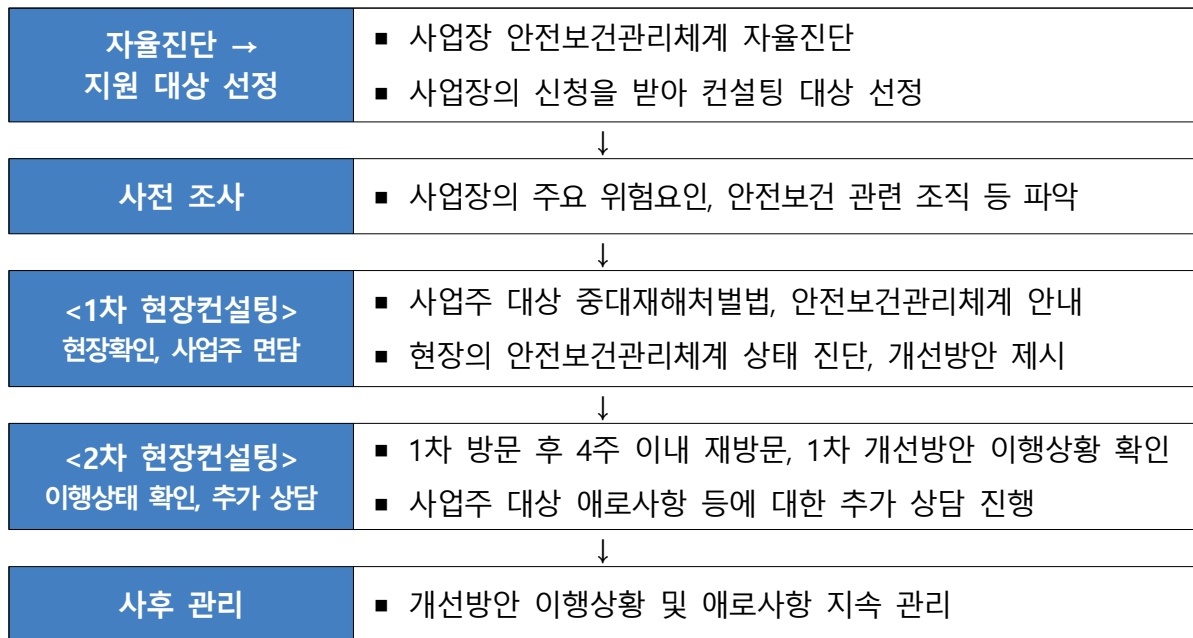
제6조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)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
-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,
 - ① 50~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, 이후 ②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.
- 우선 전국 50~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(10,745개소)에 ‘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’를 송부하여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,
 -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.
-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, 안전보건체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,
 -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,
 -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.

□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,

- 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자율책임 아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의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”이라며,
- “중소기업에서 각각의 재정적, 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- 특히, 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패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경영 리더의 의지에 달려 있다.”라며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.

<현장지원단 운영 절차 및 주요 지원내용>





<붙임1>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 개요

<붙임2>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및 실행전략

<붙임3>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비교

<붙임4>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내 안전보건관리체계

<붙임5> 현장컨설팅 신청서

 공공누리	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남덕현 사무관(☎044-202-8930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

- (목적)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'규제방식'에서 기업의 '자기 규율(self regulatory)'과 '목표설정(goal setting)'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
 - 특히,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,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어,
 - 관심 및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50~299인 중소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
- (대상) 제조업 50~299인 사업장
- 단계별 운영절차 및 주요 지원 내용
 - (1단계: 자율진단) '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' 송부(9월 5주),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진단
 - 관할 지청에서 자율진단 관련 상시 유선 상담 진행
 - (2단계: 현장 컨설팅) 구체적 진단 및 개선방안을 희망하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진행
 - (사전 진단) 사업장의 조직, 위험요인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사전 파악*
 - * (사업주 사전 협조 필요사항) 사업장 보유 위험기계·물질 현황, 조직 현황 등
 - (현장 컨설팅)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(안전보건관리체계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컨설팅은 사업주,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)
 - * △ (1차 컨설팅)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처벌법,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, 현장 진단(위험요인 관리상태, 근로자 참여 여부 등), 개선방안 제시
 - △ (2차 컨설팅) 개선방안 이행상황 확인,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
 - (3단계: 사후관리) 계획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 지원

핵심 요소	실행전략
1. 경영자 리더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, 목표를 정합니다. ■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(인력·시설·장비)을 배정합니다. 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, 참여를 독려합니다.
2. 근로자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. 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. 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.
3. 위험요인 파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. ■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. ■ 위험 기계, 기구, 설비 등을 파악합니다. ■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. ■ 위험장소 및 위험작업을 파악합니다.
4. 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. ■ 위험요인별 제거,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합니다. 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. ■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.
5. 비상조치 계획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`시나리오`를 작성합니다. ■ `재해 발생 시나리오`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. ■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.
6.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합니다. 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,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7. 평가 및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합니다. ■ `안전보건관리체계`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. ■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

구분	산업안전보건법	중대재해처벌법(중대산업재해)
의무주체	사업주(법인사업주+개인사업주)	개인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
보호대상	근로자, 수급인의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	근로자, 노무제공자, 수급인,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
적용범위	전 사업장 적용 (다만,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)	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(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)
재해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대재해 : 산업재해 중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* 산업재해 :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 등에 의하거나 직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·부상·질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대산업재해 :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
의무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주의 안전조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레스·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·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환기·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→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(680개 조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→ ①-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
처벌수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연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·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·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연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(병과 가능) 부상·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·질병 10억원 이하 벌금

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전·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
2.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
 - * (대상)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인 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②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
3.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·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,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 - ※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
4.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·집행하도록 할 것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조,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필요한 권한·예산을 주고, 반기 1회 이상 평가·관리할 것.
6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상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.
7.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, 그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을 마련·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 - ※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·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로 대체 가능
8.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작업 중지, 근로자 대피,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하고, 반기 1회 이상 이행여부 점검할 것
9.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·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,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이행여부 점검할 것
 - 가.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
 - 나.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·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
 - 다.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·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

